

□ 전산 (신입 종합직 일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20.정보통신	01.정보기술	02.정보기술개발	01.SW아키텍처	02.응용SW엔지니어링
			04.DB엔지니어링	05.NW엔지니어링
		03.정보기술운영	01.IT시스템관리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가격공시</li> <li>부동산 조사·통계</li> <li>부동산 및 감정평가 시장관리</li> <li>청약관리, 리츠 시장관리, 보상수탁사업</li> <li>도시재생사업 및 녹색건축</li> <li>부동산 R&amp;D 및 정책지원</li> </ul>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아키텍처) 01.SW아키텍처 수행관리, 10.SW아키텍처요구사항 명세화, 12.SW아키텍처 설계</li> <li>(응용SW엔지니어링) 19.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분석 21.애플리케이션 설계 27.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li> <li>(DB엔지니어링) 02.개념데이터 모델링, 05.데이터베이스 구현, 08.데이터베이스 성능 확보</li> <li>(NW엔지니어링) 04.네트워크 자원관리 설계, 08.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구현</li> <li>(보안엔지니어링) 01.보안구축계획수립, 04.관리적 보안 구축, 05.물리적 보안 구축</li> <li>(IT시스템관리) 07.NW운영관리, 08.DB운영관리, 11.IT시스템통합 운영관리</li> </ul>			
직무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기획 및 개선, 정보시스템(H/W, S/W, VPN망 등) 통합 운영, 정보기술 아키텍처, 모바일앱 개발·운영 및 관리, 각종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정보보안 업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전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점검 등</li> </ul>			
전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li> </ul>			
일반요건	연령,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전공	무관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아키텍처) 소프트웨어공학, SW 개발 방법론, SW구현 기술 내용, 데이터베이스 이론 등</li> <li>(응용SW엔지니어링) 응용SW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언어(C, C++, Java-JSP/Servlet 등)와 도구(IDE 등)의 활용방법에 대한 이해, 데이터베이스 이해 등</li> <li>(DB엔지니어링) 논리 데이터모델에 대한 지식, 함수 종속성 및 이상 현상에 대한 지식 등</li> <li>(NW엔지니어링) 네트워크 구성요소별 자원, 네트워크 프로토콜, URL, HTML, XML, HTTP 등</li> <li>(보안엔지니어링) 보안시스템 관련 지식, 네트워크 기반 공격유형 및 대응방안 등</li> <li>(IT시스템관리) 형상관리 방법론,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소프트웨어 구조 관련 개념 등</li> </ul>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아키텍처) 아키텍처 요구사항 분석 기술, SW 프로세스 조정능력 등</li> <li>(응용SW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애플리케이션/웹/데이터 액세스/테스트 자동화/기타) 활용 등</li> <li>(DB엔지니어링) 논리 E-R 다이어그램 작성능력, SQL 실행계획 분석, 프로시저 작성 기술 등</li> <li>(NW엔지니어링) 네트워크 구성요소를 판별하는 능력, 프로그래밍 코딩 기술 등</li> <li>(보안엔지니어링) 네트워크 설정 및 로그 분석 능력, 정보시스템 보안설정 능력 등</li> <li>(IT시스템관리) Unix/Linux/NT 서버 사용 및 관리 능력,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운영 기술</li> </ul>			
직무수행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W아키텍처) 고객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 응용 프로그램 구현 능력 등</li> <li>(응용SW엔지니어링) 산출물 완성도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 개발 수행에 요구되는 표준을 준수하려는 태도, 설계자간의 협업을 추구하는 태도 등</li> <li>(DB엔지니어링) IT시스템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세,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려는 태도 등</li> <li>(NW엔지니어링) 작업에 필요한 사전 정보나 기술을 준비하는 자세 등</li> <li>(보안엔지니어링) 분석적 사고방식, 보안요구사항 준수, 객관적인 업무 수행 자세 등</li> <li>(IT시스템관리) 변경관리 절차 준수, 돌발 상황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 등</li> </ul>			
필요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문 참고</li> </ul>			
직업기초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li> </ul>			
참고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ww.ncs.go.kr</li> </ul>			

□ 박사(부동산·도시) [신입 종합직 전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0.영업판매	02.부동산	01.부동산컨설팅	01.부동산 개발	
		02.부동산관리	02.상업용 건물 관리	03.부동산 자산관리
		03.부동산중개	01.부동산 중개	02.부동산 정보제공
14.건설	06.도시·교통	01.국토·도시계획	02.도시계획	05.도시개발
		03.주거서비스	01.주거서비스지원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가격공시</li> <li>○ 부동산 조사·통계</li> <li>○ 부동산 및 감정평가 시장관리</li> <li>○ 청약관리, 리츠 시장관리, 보상수탁사업</li> <li>○ 도시재생사업 및 녹색건축</li> <li>○ 부동산 R&amp;D 및 정책지원</li> </ul>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개발) 01. 개발사업현황조사, 02.개발여건분석, 06.개발사업타당성분석</li> <li>○ (상업용 건물관리) 10.상업용건물관리 시장분석</li> <li>○ (부동산 자산관리) 11.부동산자산 시장분석, 29.부동산금융</li> <li>○ (부동산중개) 01.부동산 시장 분석, 02. 부동산 자료 수집·제공, 04.부동산 현황 분석</li> <li>○ (부동산 정보제공) 01.부동산정보제공서비스 사업기획, 03.부동산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04.부동산정보 분석, 07.부동산정보 콘텐츠 제공</li> <li>○ (도시계획) 01.계획타당성검토, 02.조사분석, 12.토지이용계획 검토</li> <li>○ (도시개발) 02.도시개발 사업타당성 수립, 03.도시개발 조사분석, 10.도시개발 금융계획 수립, 11.도시개발 마케팅 수립, 12.도시개발 운영관리</li> <li>○ (주거서비스지원) 03.주거서비스 조사분석, 04.주거서비스 인증 관리, 07.주거서비스 정보체계 운영</li> </ul>			
직무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산업·정책·금융(리츠, 부동산 펀드 등) 등의 조사 및 연구, 국내 부동산 관련 학회·세미나 개최 등 부동산연구 교류협력 추진, 부동산 투자자문(개발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부동산 자산운용 및 금융 등),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운영 등 관련 연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상업용 부동산시장 지표 개발 및 투명성 확보 등 관련 연구, 부동산산업 실태조사 및 기업경기실사지수 공표 등 관련 연구</li> </ul>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일반요건	연령,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전공	채용분야 관련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개발과정 및 관련 제도·법령에 대한 이해, 상권·입지·수요·공급에 관한 부동산 경제이론, 국내·외 부동산금융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 실거래 및 매물정보 수집 방법, 부동산 가격 및 시세와 관련된 시장이론,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개념 및 관련 조사분석 방법, 도시개발 관련 제도·사업수행 프로세스 및 관련 조사분석 방법, 주거서비스 개념·서비스 항목·관리체계 및 조사방법 등</li> </ul>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시장동향 분석 능력, 조사대상 물건 이해도,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처리능력, 지역환경·개발수요 등 자산가치에 미치는 시장환경에 대한 분석능력, 정책변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 분석 능력, 민·관 부동산 정보제공 체계 파악 및 고도화 추진 능력, 도시계획 관련 정보 조사 및 분석 능력, 도시개발 수행절차·내용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사례 조사 능력, 주거서비스 개념의 이해 및 관련 조사 능력 등</li> </ul>			
직무수행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조사 및 분석을 위한 합리적인 사고, 자료수집 및 활용에 대한 성실한 자세, 시장여건 변화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체크하는 노력, 정책변화에 대한 관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태도, 정보제공내용에 대한 정성을 유지하려는 태도, 도시계획 상의 이용규제를 정확히 확인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세심함, 도시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 안정적 시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 주거서비스 지원방향 설정과 관리를 위한 진취적인 생각과 노력</li> </ul>			
필요자격	○공고문 참조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참고사이트	○ www.ncs.go.kr			

□ 건축사 (신입 종합직 전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4.건설	03.건축	01.건축설계·감리	01.건축설계
			02.건축구조설계
			03.건축공사감리
		03.건축설비설계·시공	01.건축설비설계
			02.건축설비시공
04.건축설비 유지관리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가격공시</li> <li>○ 부동산 조사·통계</li> <li>○ 부동산 및 감정평가 시장관리</li> <li>○ 청약관리, 리츠 시장관리, 보상수탁사업</li> <li>○ 도시재생사업 및 녹색건축</li> <li>○ 부동산 R&amp;D 및 정책지원</li> </ul>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설계) 08.건축설계 도서작성, 17. 건축 환경설비 검토, 18.건축설계 도면 해석</li> <li>○ (건축공사감리) 01.공사착공관리, 03.설계관리, 06.품질관리, 09.준공관리</li> <li>○ (건축설비설계) 01.설비설계 계획, 02.설비시스템 검토, 03. 에너지계획 수립, 04.친환경 에너지계획 검토, 10.설계검증 시뮬레이션</li> <li>○ (건축설비시공) 01.설계도서검토, 02.시공계획수립, 03.자재검토, 04.관련법규검토</li> <li>○ (건축설비 유지관리) 01.설비운영종합계획, 02.건축설비 유지관리 에너지관리</li> </ul>		
직무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건축)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녹색 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교육시설 안전 인증 등</li> </ul>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일반요건	연령,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전공	무관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설계) 건축환경에 대한 지식, 패시브·액티브 건축요소에 대한 지식,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에 대한 지식, 건물에너지평가에 대한 지식, 건축설비에 대한 지식 등</li> <li>○ (건축공사감리)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 설계도면 해독 지식, 공종별 시방기준에 대한 지식 등</li> <li>○ (건축설비설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 공기조화설비시스템에 대한 지식, 자동제어 시스템에 대한 지식, 에너지에 대한 지식, 에너지회수시스템에 관한 지식 등</li> <li>○ (건축설비시공) 설계도면 해독, 설비시스템 지식, 공사비 원가 지식, 공정에 대한 지식</li> <li>○ (건축설비 유지관리) 건축법 및 건축기계설비 기준에 대한 이해, 기계설비 계통에 대한 지식 등</li> </ul>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설계) 계획내용 이해 능력, 설계 설명서 작성기술, 시방서 작성 능력 등</li> <li>○ (건축공사감리) 기술습득 및 검토 능력, 안허가 필요 공종 검토 능력, 자료 작성 및 보관 능력 등</li> <li>○ (건축설비설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평가능력, 인증제도 적용 및 제안기술, 각 시스템의 분석능력, 각 시스템의 적용능력,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의 적용 기술 등</li> <li>○ (건축설비시공) 설계도면 검토능력, 원가분석 관리기술, 자재사양과 특성 이해 능력 등</li> <li>○ (건축설비 유지관리) 건축기계설비 도면이해 능력, 에너지 손실 취약점 분석 기술 등</li> </ul>		
직무수행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설계)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기본개념에 충실히 접근하는 태도 등</li> <li>○ (건축공사감리)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태도, 업무관리에 대한 공정성, 치밀한 보고서 작성 태도 등</li> <li>○ (건축설비설계) 에너지절약을 위한 확실한 태도, 인증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태도 등</li> <li>○ (건축설비시공) 철저한 기록 자세, 기술 기준 준수, 매뉴얼 준수 의지 등</li> <li>○ (건축설비 유지관리) 최근 건물의 에너지 사용 경향 변동에 대한 이해 등</li> </ul>		
필요자격	○ 공고문 참고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참고사이트	○ www.ncs.go.kr		

## □ 건축시공기술사 (신입 종합직 전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4.건설	03.건축	01.건축설계·감리	03.건축공사감리
		03.건축설비설계·시공	02.건축설비시공
	06.도시·교통	01.국토·도시계획	04. 도시재생 05.도시개발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가격공시</li> <li>○ 부동산 조사·통계</li> <li>○ 부동산 및 감정평가 시장관리</li> <li>○ 청약관리, 리츠 시장관리, 보상수탁사업</li> <li>○ 도시재생사업 및 녹색건축</li> <li>○ 부동산 R&amp;D 및 정책지원</li> </ul>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공사감리) 03.설계도서관리, 04.공정관리, 05.공사비관리</li> <li>○ (건축설비시공) 01.설계도서검토, 02.시공계획수립, 03.자재검토, 04.관련법규검토, 09. 원가관리</li> <li>○ (도시재생) 01.도시재생 기획, 02.도시재생 역량강화 지원 03.도시재생 조사분석, 04. 도시재생계획 수립, 10.도시재생 협의조정, 11.도시재생 운영관리</li> <li>○ (도시개발) 01.도시개발 기획, 02.도시개발 사업타당성 수립, 03.도시개발 조사분석, 07.개발행위허가계획 수립, 09.도시개발 협의조정</li> </ul>		
직무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검증,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등</li> </ul>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일반요건	연령,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전공	무관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공사감리)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 설계도면 해독 지식, 공종별 시방기준에 대한 지식 등</li> <li>○ (건축구조설계) 건축구조설계에 대한 지식, 도면에 대한 지식, 구조설계 지식 등</li> <li>○ (건축설비시공) 설계도면 해독, 설비시스템 지식, 공사비 원가 지식, 공정에 대한 지식</li> <li>○ (건축설비 유지관리) 건축법 및 건축기계설비 기준에 대한 이해, 기계설비 계통에 대한 지식 등</li> <li>○ (도시재생)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지식, 도시재생유형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 도시재생 관계 법률에 대한 지식 등</li> <li>○ (도시개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지식, 도시정비사업 관계법규에 대한 지식, 도시정비사업 진행 절차에 대한 지식 등</li> </ul>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설계) 계획내용 이해 능력, 설계 설명서 작성기술, 시방서 작성 능력 등</li> <li>○ (건축공사감리) 기술습득 및 검토 능력, 안허가 필요 공종 검토 능력, 자료 작성 및 보관 능력 등</li> <li>○ (건축구조설계) 조사내용 요약 기술, 정보 분석 능력, 업무, 구조도서 판독 능력 등</li> <li>○ (건축설비시공) 설계도면 검토능력, 원가분석 관리기술, 자재사양과 특성 이해 능력 등</li> <li>○ (건축설비 유지관리) 건축기계설비 도면이해 능력, 에너지 손실 취약점 분석 기술 등</li> </ul>		
직무수행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설계)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기본개념에 충실히 접근하는 태도 등</li> <li>○ (건축공사감리)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태도, 업무관리에 대한 공정성, 치밀한 보고서 작성 태도 등</li> <li>○ (건축구조설계) 적극적 관찰태도, 핵심내용 파악 태도, 정확하고 세심한 업무 태도 등</li> <li>○ (건축설비시공) 철저한 기록 자세, 기술 기준 준수, 매뉴얼 준수 의지 등</li> <li>○ (도시재생) 사업일정을 관리하고 절차에 따라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태도 등</li> <li>○ (도시개발) 현황조건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논리적 태도, 사업비 등을 세밀하고 공정하게 검토하려는 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검증하려는 태도 등</li> </ul>		
필요자격	○ 공고문 참고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참고사이트	○ www.ncs.go.kr		

## □ 회계·사무 (신입 종합직 고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경영·회계·사무	02.총무·인사	01.총무	01.총무
		03.일반사무	02.사무행정
	03.재무·회계	02.회계	01.회계·감사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가격공시</li> <li>○ 부동산 조사·통계</li> <li>○ 부동산 및 감정평가 시장관리</li> <li>○ 청약관리, 리츠 시장관리, 보상수탁사업</li> <li>○ 도시재생사업 및 녹색건축</li> <li>○ 부동산 R&amp;D 및 정책지원</li> </ul>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무) 02.행사지원관리, 04.비품관리, 07.업무지원, 08.총무문서관리, 09.복리후생지원</li> <li>○ (사무행정) 01.문서작성, 02.문서관리, 03.자료관리, 06.회의 운영, 07.사무행정 업무관리, 08.사무환경조성, 09.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li> <li>○ (회계·감사) 01.전표관리, 02.자금관리, 04.결산처리, 05.회계정보시스템 운용, 06.재무비율분석, 07.회계감사, 08.사업결합회계</li> </ul>		
직무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무)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지원 및 복지지원, 대·내외적인 회사의 품격 유지를 위한 제반업무 등</li> <li>○ (사무행정)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관리, 문서작성, 데이터 관리, 사무자동화 관리운영 등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 등</li> <li>○ (회계·감사) 조직의 자금운영계획의 수립 지원, 예산의 집행, 회계, 결산, 출납 및 세무에 관한 업무, 채권의 관리와 회수총괄 및 수익인식에 관한 업무, 중장기 재무계획수립을 위한 재무현황 등 기초자료 작성 등</li> </ul>		
전형방법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일반요건	공고일 기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에 재학 중인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최종학력이 고졸이하)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교육요건	공고일 기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에 재학 중인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최종학력이 고졸이하)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무) 행사 운영, 사후관리, 비품 구매 실무, 자산관리, 증명서 종류 및 발급절차, 사무공간 배치 방법, 우편의 종류, 인쇄물 제작, 복리후생 규정과 운영계획 수립, 제도 운영, 복리후생 시설관리 등</li> <li>○ (사무행정) 부서(팀)의 업무분장 내용, 문서기안 절차 및 양식, 체계, 문서규정, 문서대장 관리, 여비규정, 운영방법, 안내방법, 회의 운영 방법, 업무용 소프트웨어 특성, 사무기기운용 매뉴얼, 기초통계지식 등</li> <li>○ (회계·감사) 기본회계지식, 회계규정, 회계정보시스템 관련 지식 등</li> </ul>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무) 행사진행 기술, 전산시스템 활용, 장부정리능력, 개정사유 파악능력, 비용 건적 분석능력, 문서분류 기술, 문서작성 기술, 우편물 분류기술, 정보검색능력, 기획력, 분석력, 문제해결능력 등</li> <li>○ (사무행정) 문서작성 및 기안 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문서분류능력, 문서관리능력, 회의운영 및 관리능력, 보고능력, 사무기기 활용능력, 업무전달능력, 사무물품 재물조사 및 구매기안 능력,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등</li> <li>○ (회계·감사) 회계정보시스템 사용능력 등</li> </ul>		
직무수행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무) 종합적 사고 자세, 타부서와 협업자세, 정확성, 공평한 원칙준수, 신속한 업무처리, 내부고객에 대한 서비스태도,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서비스 정신, 개선의지,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태도</li> <li>○ (사무행정) 경청하는 태도, 일정계획 준수, 성실성, 주의 깊은 관찰력, 업무협조 자세, 적극적 정보수용 의지, 구성원 지원의지, 문제해결 의지, 철저한 관리태도</li> <li>○ (회계·감사) 업무처리규정 및 지침 준수, 정확한 업무처리 태도</li> </ul>		
필요자격	○ 공고문 참고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참고사이트	○ www.ncs.go.kr		

□ 기획·예산 (경력 종합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경영·회계·사무	01.기획사무	01.경영기획	01.경영기획
	02.총무·인사	01.인사·조직	01.인사
	03.재무·회계	01.재무	01.예산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가격공시</li> <li>○ 부동산 조사·통계</li> <li>○ 부동산 및 감정평가 시장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관리, 리츠 시장관리, 보상수탁사업</li> <li>○ 도시재생사업 및 녹색건축</li> <li>○ 부동산 R&amp;D 및 정책지원</li> </ul>
능력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기획) 01.사업환경 분석, 02. 경영방침 수립, 03.경영계획 수립, 04.신규사업 기획, 06.예산 관리, 07.경영실적 분석, 09. 경영 리스크 관리</li> <li>○ (예산) 01.예산편성지침 수립, 03.연간종합예산 수립, 06.예산실적관리, 07.예산위험관리</li> </ul>		
직무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경영목표 및 전략경영계획, 장·단기 조직 운영계획의 수립, 중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중·장기 재무예산계획 수립, 정부예산 편성 등 관련업무,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작성,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이행계획 수립 및 관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 이행계획 수립 및 관리, 정부 일자리 정책 관련 이행계획 수립 및 관리 등</li> </ul>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일반요건	연령,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전공	무관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기획) 경영 전략과 사업 핵심 활동, 경영이념과 경영철학, 핵심가치의 정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 중장기·연간 사업별 경영계획, 예산계획 수립원칙, 예산편성 지침, 실행 계획 추진조직과 관련 조직의 주요 역할, 경영리스크 관리 정책 등</li> <li>○ (예산) 예산관리규정, 예산수립절차, 사업단위별 업무내용, 중·장기 전략 등</li> </ul>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기획) 분석결과로부터 시사점 도출 기술, 경영환경 분석기법, 전략사업의 연간 사업계획과 정합성 분석 기술, 기획서 작성 기술, 투자금 집행계획 작성 기술, 예산 집행 결과 정산 기술, 사업에 대한 평가 기술, 예상 손익 산출 기술, 경영리스크 대응 기술 등</li> <li>○ (예산) 실적분석 능력, 예산안 보고서 작성능력, 계획대비 차이 분석능력, 재무제표 분석능력, 민감도 추정 분석 능력, 위험탐지 체크리스트 작성 능력 등</li> </ul>		
직무수행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기획) 외부환경이 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적 자세,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 경영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태도, 데이터에 바탕을 둔 경영목표 제시 노력, 전략적 사고, 종합적 시각을 견지하려는 자세,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대한 전략적 사고 등</li> <li>○ (예산) 예산지침서의 내용 준수 의지, 각 예산안에 대한 공정하게 분석하려는 자세 등</li> </ul>		
필요자격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상장기업의 기획·예산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참고사이트	○ www.ncs.go.kr		

□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별첨3

## 한국부동산원 본사 및 지사 안내



구 분	소재지	구 분	소재지
본 사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홍성지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8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	청주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34
서울강남지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	충주지사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31
서울중부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호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61	순천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296
수도권남부 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4	전주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수원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4	군산지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35
성남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81번길 16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
수도권북부 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부산동부지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부산서부지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81번길 10
의정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58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고양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춘천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6	진주지사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4
강릉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087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충청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안동지사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천안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38	포항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1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안내문

### □ 신청 시 유의사항

- [참고]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참고]의 편의 제공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진단(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 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편의제공 내용 입력란에 ①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②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해당채용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다만, 임산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아래 3가지)

-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및 시야각 명기)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

장애유형	예시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력/시야: 좋은 눈 0.07,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참고**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 **필기시험**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제공 내용	증빙서류	비고	
지체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존 1~6급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기존 3급 1, 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확대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시험시간 1.7배 연장 축소문제지 제공(확대독서기 사용자)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의사진단서 (원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확대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시험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확대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5급 2호, 6급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2~6급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장애유형과 등급을 확인

## □ 면접전형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제공 내용
지체장애	상지	전담도우미 지원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PT면접 진행 시 발표 준비시간 1.5배 연장 등
	하지	전담도우미지원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등
뇌병변장애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PT면접 진행 시 발표 준비시간 1.5배 연장 등
시각장애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PT면접 진행 시 발표 준비시간 1.5배 연장 등
청각장애		보조공학기기(인공와우 등) 착용 허용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등

※ 발표 준비시간 1.5배 연장은 종합병원 의사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공여부를 결정하므로 진단서 원본 제출 필요(종합병원 이상)

**별첨5**

**채용예정 직급상당 경력·자격 기준**

□ **인사관리요강 [별표1] 채용예정 직급상당 경력·자격 기준**

구 분	내 용
종합직 1급	1.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4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력,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종합직 2급	1.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4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력,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종합직 3급	1.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5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력,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종합직 4급	1.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5급 내지 6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감정평가사 등 자격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경력,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종합직 5급	1.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6급 내지 7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석사학위 및 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감정평가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5.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경력,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주) 1.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상 법인의 직급은 부동산원 직급과 동일·유사한 경우에 한하며, 상이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직급을 적용할 수 있다.  
2. 공무원 경력의 직급기준은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년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I **이전지역인재(대구·경북)**

□ **이전지역인재 범위**

- 본사 이전지역(대구·경북)에 소재한 지방대학(대학원 제외)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단,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기준을 따름

□ **대구·경북 소재 이전지역 학교의 범위**

가. 대구·경북 소재 이전지역 학교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2)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나. 대구·경북 소재 이전지역 학교 제외 대상

-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 그 외의 이전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 2개 대학 이상 재학 중인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

- 가. 본교의 위치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 나.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 다.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인재에 해당
- 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비해당
  - 이전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비해당
- 마.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바.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비해당
- 사.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비해당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통합공시 기준을 따름

□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범위**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li> </ul> </li> <li>○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li> </ul> </li> </ul>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 그 외의 비수도권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2개 대학 이상 재학 중인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

가. 서울소재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 졸업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 졸업(예정)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나.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

다.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지방대학 중퇴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
- 서울소재대학 중퇴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

라.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